

# 배재대학교 감염병 관리 규정

[제정 2017.3.15., 일부개정 2020.11.1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배재대학교(이하 “대학”이라한다.) 교육 및 연구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대학(원), 대학본부, 연구소, 부속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생, 연구원 및 기타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사람에게 침입한 특정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 혹은 병원체가 생산하는 독성 물질(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을 말한다.
2. 감염병 (의심)환자란 의료기관의 진료 결과 감염병 확진을 받았거나 의사 환자로 진단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유행이란 한 지역사회나 집단에 감염병이 평소에 나타나던 수준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4. 방역물품이란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발열감시, 전과차단 조치, 격리 및 평상시 손씻기 실천, 학교 소독 등에 필요한 장비, 물품을 의미한다.

## 제2장 감염병관리위원회

**제4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학생인재개발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생활관장, 대학교육혁신원장, 건강증진실장, 간호학과 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1.]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1.>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본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집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염병 관리 규정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대학의 주요 정책 결정
3. 감염병 총괄관리자 추천
4. 방역물품 공급 및 방역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위기대응계획의 검토
6.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7. 기타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장 감염병 관리 조직

**제10조(감염병 관리 조직의 구성)** ① 총장은 대학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관리 조직은 감염병 총괄관리자,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학사지원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한다.

- ③ 발생감시팀은 대학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며,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 감염병 관리자, 모니터링요원, 건강증진실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 ④ 예방관리팀은 평상시의 예방활동과 감염병 발생시의 대응업무를 담당하며, 예방관리팀장, 감염병 관리자, 건강증진실 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3.25.>
- ⑤ 학사지원팀은 감염병으로 인한 학사의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학사지원팀장, 교무처 수업담당, 단과대학 및 대학원 수업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 ⑥ 행정지원팀은 감염병으로 인한 각종 업무에 대한 행정지원을 담당하며, 총무 인사팀장, 총무행정, 구매, 재무 담당자, 기획처 예산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3.25.>
- ⑦ 위기신속대응팀은 학부모 및 학생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업무를 담당하며 입학담당자, 등록담당자, 학사담당자, 기획담당자, 예산담당자, 생활관운영담당자로 구성한다. <신설 2020.11.11.>
- ⑧ 감염병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염병관리실무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11.>

**제11조(감염병 총괄관리자)** ① 대학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신고체계 구축과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총괄지휘를 담당하기 위해 감염병 총괄관리자를 지정한다.

- ②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 ③ 감염병 총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총괄 지휘 담당
  2.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고체계의 구축
  3. 감염병 관리 조직의 구성 및 관리

**제12조(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 ① 대학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신고업무를 총괄하는 발생감시팀장으로 감염병 발생감시담당자를 지정한다.

- ②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는 감염병 총괄관리자가 임명한다.
- ③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는 대학의 감염병 감시체계를 지휘감독하며, 감염병 발생 정보를 취합하여 감염병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13조(감염병 관리자)** ① 대학 내 각 기구별로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 및 관리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감염병 관리자는 각 기구의 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총괄관리자가 지정하며, 이 때 감염병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기구에는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대학본부, 연구소, 부속기관, 생활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염병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 기구 내 감염병 발생 감시
2. 감염병 발생 정보의 취합 및 보고
3. 구성원들에게 감염병 관련 정보의 제공
4. 예방접종 관리
5. 감염병 (의심) 환자 관리
6. 보건소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
7. 기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4조(모니터링요원)** ① 대학의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는 모니터링요원을 지정한다.

② 모니터링요원은 교수, 각 학과의 행정조교, 학생 대표, 동아리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③ 모니터링요원은 일상적인 학교생활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의심)환자로 진단을 받은 학생이나 교직원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해당 환자가 소속된 기구의 감염병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증진실)** 건강증진실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3.25.>

1. 감염병 발생 감시
  2. 학생 및 교직원용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3.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상담
  4. 예방접종 실시(감염병 유행 차단 조치로 필요한 경우에 한함)
  5. 감염병 (의심) 환자 관리
  6. 보건소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
  7. 기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활동 등
- [제목개정 2020.3.25.]

#### 제4장 감염병 관리 및 조치사항

**제16조(예방접종)**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대학 내 예방접종 확대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1. 모든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실시를 권고하고, 이에 대한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숙사에 입소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입소 이전 MMR(Measles, Mumps, Rubella) 접종을 실시할 것을 안내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보건의료 전공 계열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실시하기 이전 B형간염과 MMR(Measles, Mumps, Rubella) 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4. 해외 전입 학생들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방역)** ①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또는 유행 시 임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3.25.> (직제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